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7.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25호로 2013년 6월 24일 운동규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의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

- 2012년 교육부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보면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가해학생 중 58%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전체의 69%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등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신설하여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됨.

본 조례안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

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